

제 14 장 선 거

제82조 본회의 각 자치기구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83조(선거의 시기)

1. 총학생회 정, 부회장의 선거는 당해 임기년도 임기개시 전에 완료한다.
2. 단과대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3. 단, 각 기구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총학생회선거 시행 세칙을 따른다.

제84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85조(피선거권)

1. 총학생회 정·부회장

- 가. 본 회의 회원으로 본교에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인 열성을 가진 자.
- 나. 본 회의 회원의 최소 10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본 회의 회원이 200명 이상이 되지 않은 단과대 및 학생자치기구는 최소 5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다.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자

2. 단과대학회장단 또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 한자로 하며, 그 외 기타 학생자치기구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을 따른다.

제8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겸임하며(단,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부위원장인 이를 대행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전원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회장으로 구성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의 선거를 운영하며, 총선거와 관련하여 의결 및 심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 및 자치기구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87조(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부 총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보궐선거는 대의원장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3. 기타 자치기구장의 궐위 시에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제88조(인수위원회)

1.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부,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3.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89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 시행 세칙을 따른다.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ANYANG UNIVERSITY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은 총학생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1. 총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총선거는 본회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총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3. 총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4. 총선거는 선거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며 건전한 선거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총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회장단 선거에 적용하며 그 외 학생자치기구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입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정의) 본 세칙에서 “학내”란 다음 각 호로 말한다.

1. 안양캠퍼스
2. 강화캠퍼스

제5조(선거사무협조)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중립의무) 총학생회장단을 포함한 집행부 및 본회 위원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직위로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8조(선거권) 본 대학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9조(피선거권)

1. 총학생회 정·부회장

- 1) 본 회의 회원으로 본교에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인 열성을 가진 자.
- 2) 본 회의 회원의 최소 10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본 회의 회원이 200명 이상이 되지 않은 단과대 및 학생자치기구는 최소 5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3)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자

2. 단과대학회장단 또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 한자로 하며, 그 외 기타 학생자치기구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을 따른다.

제 3 장 기관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11조(구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회장으로 구성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과의 선거를 운영하며, 총선거와 관련하여 의결 및 심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시 전까지 구성을 마치야 한다.

제12조(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겸임하며 모든 선거 진행과정을 관장한다. (단,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업무 및 권한)

1.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2.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3.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4.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5.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6. 총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7. 본 세칙에 따른 선거운동본부 활동 감시
8. 본 세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9. 총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제14조(사무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대의원회실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학교와 상의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1.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칙」 및 본 세칙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 진행에 임해야 한다.

제16조(위원 해임)

1.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회 회칙 및 본 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 4) 본회 회원이 아닐 때
 - 5)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징계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 때
2.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3)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
3.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가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의결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제17조(위원의 사임·추가임명)

1.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추가 임명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임·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소집)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의 소집요구
 - 2)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소집요구
2.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을 공지하지 않으면 해당 회의의 의결사항은 무효가 된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석하여야 한다.
 - 1)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9조(의사·의결정족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선거운동본부장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후보자토론회 등 그 밖에 선거운동기간 내의 세부업무에 대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전까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 제반업무 종료 이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실무단)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관련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대의원회 집행부원으로 실무단을 구성 할 수 있다.
2. 대의원회 집행부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실무단 구성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3조(선거운동본부)

1.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이다.
2.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총학생회 회장단을 제외한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3.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등록 기간 종료 후, 총학생회 및 학생지원과에 협조를 요청하여 각 선거운동본부 장소를 제공한다.

제24조(선거운동본부 구성)

1.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는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내부 선임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선거운동본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등록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거운동본부는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4.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사임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본부원이 될 수 없다.
 - 1)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 2) 해당 선거에서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인 사람
 - 3)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제26조(업무 및 의무)

1. 선거운동본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본부는 본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기간과 투표일

제27조(선거기간의 수립)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투표일에 따라 선거기간을 정한다.
2. 선거기간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연장투표 여부 및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선거기간)

1. 총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1) 총선거시행공고일
 - 2) 총선거위탁기간
 - 3) 후보등록기간
 - 4) 선거운동기간
 - 5) 투표일
 - 6) 개표일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 시행공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확정된 선거기간
 - 2) 사전투표 유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
 - 3) 후보등록서류
 - 4) 자치기구 총선거위탁신청서류
 -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 6) 제16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서약 내용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후 빠른 시일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인명부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후보등록 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단, 온라인 선거시에는 학교 자체 온라인선거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을 금지한다.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1항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제32조(이의신청)

1.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1. 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1.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후보등록

제35조(동반 출마)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동반 출마해야 한다.

제36조(후보등록)

1. 총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 서류와 추천인 서명부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후보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의 정보(사진 포함)
 - 2)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 3) 후보자 약력, 출마동기, 공약사항
 - 4) 선거운동본부 및 본부장의 이름과 연락처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후보자를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후보의 등록을 허가한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후보 등록기간 종료 후 이를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통보하며, 선거운동본부장과 수정 제출 날짜를 협의하여 재제출 받는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 수정 기회를 주고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5.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 중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 2)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해당 자치기구 선거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추천인 서명부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공고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첨으로 한다.

제36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에서 규정하는 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3(등록무효)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1) 허위사실이 있는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된 날짜까지 재제출하지 않은 때
 - 2) 후보등록기간 이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37조(추천인서명)

1. 추천인서명은 후보공고 이후부터 후보등록기간 종료 이전까지 가능하며 후보공고 이전의 추천인서명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2. 추천인서명은 학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3. 유세를 통한 추천인서명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서명용지는 이름, 학과, 학번, 서명, 추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중 누락된 요소가 있는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인서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추천인서명은 무효로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내에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내가 아닌 장소에서 온라인 서명 등 특수한 방법으로 추천인서명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4 절 선거 운동

제38조(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제39조(선거 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을 결정하여 공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

제40조(선거 운동 장소)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기숙사 호별 방문을 제외한 방법으로 학내에서만 가능하며, 단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개인유세
2. 합동유세
3. 후보자토론회·인터뷰 참가
4. 선전물의 게시·배포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에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42조(개인유세)

1.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또는 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2.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자유롭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3조(합동유세)

1. 합동유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2. 합동유세장소, 유세 시간 및 순서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하에 정한다.
3. 후보자는 타 후보자의 유세 시간 중에 유세를 방해하거나 자기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을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합동유세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44조(후보자토론회)

1.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2.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3.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선전물)

1. 선전물은 정책공약,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을 받은 내용을 온라인 매체에 게시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선전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자에 일괄 심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온라인 선전물에 대한 심사 승인 일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선전물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정책공약)

1.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각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공약자료를 후보등록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정책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부착 및 배포한다.

제47조(유인물)

1. 유인물이란 A3 크기 이하로 발행하는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제48조(게시물)

1. 게시물은 대자보, 소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2. 모든 게시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게시관에만 부착 가능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1) 바닥에 부착하는 행위
 - 2) 계단에 부착하는 행위
 - 3) 유리창 및 유리문에 부착하는 행위
 - 4)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 5)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3.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현수막의 경우 가로 900cm * 세로 120cm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4.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온라인 선전)

1.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 2) 학교 SNS 계정
 - 3)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제50조(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본회 회원의 선거·후보에 관한 단순한 의사 개진 및 의사표시
 - 2) 본회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 3)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4) 투표독려행위

제51조(투표독려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독려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숙사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 개진이 포함된 경우.

제52조(총학생회 및 언론기관의 선거운동 제한)

1. 학내 언론기관(신문사, 방송국 등)은 선거 관련 의사 개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2. 본회 또는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3조(허위사실 유포 및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1. 선거운동이나 선전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까지 선거운동본부는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해야 한다.
2. 후보 및 선거운동본부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가 정정 및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된 기간안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54조(부정선거운동)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1)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 유도
 -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살포
 - 3) 선거 무효 유도
 - 4) 선거의 자유 방해
 - 5) 직권 남용에 의한 직·간접적 선거 방해
 - 6) 유세 방해 및 선전물 훼손
 -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방해
 - 9)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 10) 후보 인신공격
 - 11)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 12)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2.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3. 부정선거운동을 발견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5조(기타사항) 본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

제 5 절 징계

제56조(징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 선거운동본부가 징계를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경우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2.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이 2회 누적되면 주의 1회로 대체한다.
3.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로 대체한다.
4.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57조의2(다수의 징계사안의 처리)

1.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1개의 행위가 다수의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징계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에 따라 징계한다. 단, 각 징계 사안에서 정한 징계의 수위가 시정명령인 경우 동시 적용 한다.
2. 선거운동본부가 행한 다수의 행위가 각각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부과한다.

제58조(시정명령)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나, 본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준다.

제59조(주의)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또한, 제 54조 1항의 내용 중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주의 1회를 준다.

제60조(경고)

1.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날짜까지 시정하지 않은 때
 - 2) 제36조제3항의 후보등록서류 중 허위사실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날짜까지 수정하여 재제출했을 때
 - 3) 제53조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때
 - 4) 이 외 제54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2.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후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시간안에 지정된 공간에 게시한다.

제61조(징계의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 대상, 징계의 종류 및 이유를 징계 부과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이의제기)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되,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투표·개표

제1절 통칙

제63조(용어 정의)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1. 실 투표수: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
2. 실 투표율: (실 투표수) / (총 유권자 수)
3. 오차율: (오차) / (총 유권자 수)
4. 득표율: (해당 선거운동본부 및 후보의 득표수) / (실 투표수 - 무효투표수)

제2절 투표

제64조(투표 방법)

1. 총선거의 투표는 온라인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각 선거운동본부와 협의하여 오프라인 선거 시행 시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통해 투표를 진행한다.
2.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총선거가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에 의거 기표를 통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투표일·투표시간) 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의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66조(투표소 지정·관리)

1.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일 전까지 정하여 공고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투표소 변경은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투표소 안내, 투표 유의사항 등 투표 관련 안내문을 부착 또는 배포해야 한다. 그 밖에 선전물에 대한 부착 및 배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사무처리를 위해 투표소 별로 1인 이상의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하며, 투표 사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실무단원,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사람 중 선정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 별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사무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아닌 투표사무원 중 1인을 투표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7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생회장단 선거,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마다 별도로 제작한다.
2. 투표용지에는 각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성명만을 기재할 수 있다.
3. 선거운동본부가 2개 이상인 경우, 투표용지의 나열 순서는 추첨으로 한다.
4. 단독후보 선거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크기의 “찬성”, “반대”, “기권”란으로 구성한다.
5.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란이 있어야 한다.
6.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7.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투표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생지원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8조(투표자 확인)

1. 선거인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2.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중용하여 해당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69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학생증 또는 소정의 증명서(재학생증서 및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투표사무원의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 확인
3. 투표자의 본인 서명
4. 투표사무원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70조(투표참관인)

1. 각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진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투표소 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나 선거운동본부원 중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다른 선거운동본부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4. 해당 투표소에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상대 선거운동본부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1조(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1.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도중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책임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투표관리책임자의 판단 전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제72조(투표참관인의 부정행위)

1. 참관인이 투표소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책임자와 다른 선거운동본부 측 투표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시 투표관리책임자는 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그 선거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3) 투표 독려 행위를 하는 경우
-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73조(투표 시작 전 투표함 이송)

1.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시작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2.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74조(투표종료 시 투표함 이송)

1.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2.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3.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75조(온라인투표)

1. 온라인투표로 진행할 경우 제68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법 및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절 투표성립

제76조(투표성립요건) 선거는 투표 기간이 지나면 성립한다.

제77조(연장투표) 협의된 실투표율을 넘지 않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개표

제78조(개표)

1. 투표가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개표를 시작하고 개표 시작 시간과 장소를 선거운동본부에 공지한다.
2. 개표 진행 시, 개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장이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참관을 요청한 언론기관은 이를 참관할 수 있다.
3. 개표는 참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4. 개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총투표자수 공고
 - 2) 각 투표소 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 3) 선거운동본부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계산

- 4) 후보 별 득표를 묶음 별로 분류 및 결과공고
- 5) 최종 결과 발표
5. 개표 진행 시,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 각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6.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온라인투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개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투표용지의 무효처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4) 정해진 기표용구 이외의 방법으로 표를 한 것
 - 5) 투표소에서 날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없는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1)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어느 란에 표를 한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2)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 5) 투표용지가 훼손되었으나 지정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제5절 당선

제80조(당선 기준)

1. 개표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 가 사전에 협의한 실 투표율 퍼센테이지를 충족할 경우 당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으며, 재투표·결선투표·재선거를 시행한다.
 - 1) 오차율이 5% 이상인 경우(오프라인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
 - 2) 최고 득표 후보가 2명 이상일 때

제81조(당선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없을 경우 당선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1) 당선자 정보
 - 2) 당선자 선거운동본부명
 - 3) 투표율 및 당선자 득표율
 - 4) 투표결과(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율을 포함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진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개표를 하지 못 하였거나 개표종료 후 재투표 및 재선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이의제기)

1.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48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운영 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빠른 시일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83조(당선 확정)

1.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2.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생지원과에 보고한다.

제8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1. 학생지원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이를 승인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을 선언한다.

제6절 재투표·재선거

제85조(재투표·결선투표)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1) 제8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 3)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1) 제80조 제2항 제2호 해당하는 경우
 - 2)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종료 후 빠른시일내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제86조(재선거)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총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6장 선거 기록물

제87조(선거 기록물 관리) 선거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88조(선거시행규칙)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2.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89조(기타 보칙)

1. 본 규정은 개정전에 있었던 선거운동에 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 본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은 해당 연도 의결된 선거시행규칙을 따른다.
3. 본 선거 시행세칙은 총학생회칙과 함께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